

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

수입인지
1,000원

사건번호 : 20 타경 부동산강제(임의)경매

신청인 : ○ ○ ○

(주소)

피신청인 : ○ ○ ○

(주소)

신청취지

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청이유

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(매수인)은 20 . . . 매각대금을 낸 후 피신청인(□채무자, □소유자, □부동산 점유자)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,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(매수인)

(서명 또는 날인)

(전화번호 :

)

○○지방법원 (○○지원) 귀중

※ 유의사항

1.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채무자 ·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괄호안 네모(□)에는 피신청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표시(☒)하시기 바랍니다(예를 들어 피신청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경우에는 “☒채무자, ☒소유자, □부동산 점유자”로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).
3. 당사자(신청인+피신청인) 수×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시고, 송달료 납부서(법원제출용)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〈예시〉

1.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동 100

대 100m²

2.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동 100
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길 25

위 지상

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

50m². 끝.